

忠州市議會 第147回 臨時會

2010.07.16 (금) 11:00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
- ②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總務委員會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 정의를 위해 “클린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본 조례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위탁의 범위가 클린에너지파크인지 또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인지에 대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로 명시하고

시설 위탁에 관해 준용하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또한, 본 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관리의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폐기물 처리능력의 개선과 친환경 녹색환경을 만들고자 건설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소각, 재활용선별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반입대상 폐기물 (안 제4조)
- 나.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및 관리 (안 제6조)
- 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7조)
- 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협약 체결 (안 제8조)
- 마.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기간 (안 제9조)
- 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의 해지 (안 제10조)
- 사.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운영비 (안 제11조)
- 아. 지역주민의 감시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1)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충주시 클린 에너지파크가 오는 9월 가동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 시설은 총사업비 50,332백만원으로 2007. 11월 착공하여 오는 8월에 준공예정이며 클린에너지파크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 단지 등이 조성 되었으며

소각로는 1일 100톤, 재용용품선별처리시설은 1일 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포함한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48억 정도 소요될 전망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클린에너지파크는 시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위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음

다만,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불만을 갖고 있는 수시로 반복되는 도록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자료를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유관기관의 임무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미흡함

향후,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전교육과 활용 대책, 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의 최신상태 유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에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 하고 제3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시설물”로 수정하고

제5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로 하고 제6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시스템”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1항의 “유관기관”은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안 제20조 제2항 중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정부지도판매가격은 국토지리 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것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4조 내지 안 10조는 충주시와 유관기관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간정보 자료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 간 업무를 지정하고 입력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도록 하며, 파일 손상 시 즉시 복구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과 현업부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민원인에게 공간정보 제공과 이용절차,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시관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12조는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지역주민의 감시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클린에너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 정의를 위해 “클린 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 단지 등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본 조례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위탁의 범위가 클린에너지파크인지 또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인지에 대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로 명시하고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의 “도시기반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의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시설물”로 한다.

안 제2조 제5호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2조 제6호의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시스템”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7호를 8호로, 제8호를 9호로, 제9호를 10호로, 제10호를 11호로, 제11호를 12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관기관”이란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3호의 “교수”를 “전문가”로 수정한다.

안 제20조 제2항의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 질의 : 주민편익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답변 : 운영에 관해 용역중이며 인근주민과 시민에게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임

▶ 질의 :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대해 조례 만들 필요성은 없는가?

○ 답변 : 이 조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것임

▶ 질의 : 소각시설의 폐열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답변 : 발전해서 전기로 생산하도록 했고 일부 열은 인근 주민에게 공급

▶ 질의 : 주민감시요원의 하루에 얼마정도 지급하는지?

○ 답변 :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로 56,000원 ~ 58,000원 정도임

5. 심사결과

①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내용 수정
안 "제2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일부내용 수정

- 유관기관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2조 제7호를 8호로, 제8호를 9호로, 제9호를 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7호에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교수" 를 "전문가"로 수정

- 정부지도판매가격은 국토자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안 제20조 제2항의 내용 일부수정

②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2조 수정

- 위탁 범위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클린에너지파크"로 수정

- 준용조례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10조를 11조로, 안 제11조를 12조로, 안 제12조를 13조로, 안 제13조를 14조로,
안 제14조를 15조로하고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 조항 신설

6. 별 임

①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 수정안 1부.

②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수정안 1부.

시설 위탁에 관해 준용하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또한, 본 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관리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

▶질의 : 항공사진의 자료는 언제 준비한 것인가?

○답변 : 2008년 4월에 촬영된 자료임

▶질의 : 항공사진 한 번 찍는데 비용 및 계획은?

○답변 : 5억원 정도 비용이 들고 금년에 시내지역을 다시 촬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질의 :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

○답변 : 현재 실측량과 같음

▶질의 : 일반시민이 신청서 제출 없이 쉽게 볼 수 그런 방법은?

○답변 : 이 시스템 중에서 항공사진, 지적도, 상가정보, 문화재, 관광시설, 동산로와 같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중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의 : 통신, 가스, 송유관, 전기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는데 일반인과의 형평성에서 가급적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 한전이나 KT등 업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임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생략) | 1. (조례안과 같음) |
| 2. “ <u>도시기반시설물</u> ” 이란 _____ . | 2. “ <u>도시기반시설물</u> ” (이하 “ <u>시설물</u> ” 이라 한다) 이란 _____ . |
| 3. — <u>도시기반시설물</u> (이하 “ <u>시설물</u> ” 이라 한다)의 _____ . | 3. _____ 시설물의 _____ . |
| 4. (생략) | 4. (조례안과 같음) |
| 5. “ <u>공간정보시스템</u> ” 이란 _____ . | 5. “ <u>공간정보시스템</u> ” (이하 “ <u>시스템</u> ” 이라 한다) 이란 _____ . |
| 6. — <u>공간정보시스템</u> (이하 “ <u>시스템</u> ” 이라 한다) 에서 _____ . <신설> | 6. _____ 시스템에서 _____ . |
| 7. (생략) | 7. “ <u>유관기관</u> ” 이란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을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
| 8. (생략) | 8. (안 7호와 같음) |
| 9. (생략) | 9. (안 8호와 같음) |
| 10. (생략) | 10. (안 9호와 같음) |
| 11. (생략) | 11. (안 10호와 같음) |
| 12. (생략) | 12. (안 11호와 같음) |
| 제5조 (정의) ①(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u>교수</u> | 제5조 (정의) ①(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u>전문가</u> |

5.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이하 “클린에너지파크”라 한다)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안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클린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안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클린에너지파크”로 한다

안 제10조를 11조로, 안 제11조를 12조로, 안 제12조를 13조로, 안 제 13조를 14조로, 안 제14조를 15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조례안 | 수정안 |
|---|---|
| <p>제20조(수수료 등) ① (생략)</p> <p>② <u>국토지리정보원에서</u> <u>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u></p> <p>③(생략)</p> <p>④(생략)</p> <p>⑤(생략)</p> | <p>제20조(수수료 등)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u>국토지리정보원장이</u> <u>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 한다.</u></p> <p>③(조례안과 같음)</p> <p>④(조례안과 같음)</p> <p>⑤(조례안과 같음)</p>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조례안 | 수정안 |
|--|--|
| <p>제1조(목적) ————— <u>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u> <u>(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u> <u>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u>의—————</p> | <p>제1조(목적) ————— <u>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u>의————— ————— ————— —————</p> |
| <p>제2조(위치)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이하 “클린에너지파크”라 한다)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둔다.</p> | <p>제2조(위치 및 명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이하 “클린에너지파크”라 한다)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p> |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생략) 3. “주민편익시설”이란 체육시설,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주민편익시설”이란 <u>클린에너지파크</u>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 <p>제6조(운영 및 관리 등) ① (생략). ② ————— <u>폐기물처리시설</u>의—————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p> | <p>제6조(운영 및 관리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u>클린에너지파크</u>의—————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p> |
| <p>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략) ② ————— <u>폐기물처리시설</u> 등을—————</p> | <p>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략) ② ————— <u>클린에너지파크</u> 등을—————</p> |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디자인계획에 관한 사항
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공간, 건축물,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제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 2(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